

『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5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이창형

나. 제안이유

- '20. 8. 27.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(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-40호)
- 첨단 ICT 기반 스마트제조시스템을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지역의 제조혁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,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한 중소기업 기술자립화 형성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여부에

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기관 : 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(1) 설 립 일 : 2005. 9. 1.

(2) 조직 및 인원 : 1부 11본부 11실 21팀, 160명

(3) 소 재 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-5

(4) 기관 주요사업

1)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·운영과 관련된 사업

2)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

3)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

4)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

나. 사업개요

(1) 사 업 명 :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

(2) 사업기간 : 2021년~2025년(5년간)

(3) 출 연 금 : 금1,190백만원(금일십일억구천만원)

※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‘21년	‘22년	‘23년	‘24년	‘25년
계	216	72	57	29	29	29
국 비	160	60	40	20	20	20
도 비	16.8	3.6	5.1	2.7	2.7	2.7
시 비	39.2	8.4	11.9	6.3	6.3	6.3

* 국·도비는 각 기관에서 출연

(4) 주관기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경북도, 구미시

(5) 수행기관 : 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금오공과대학교

(6) 사업내용

1) 기술발굴 및 연계 : 특화분야 중심 양방향 기술발굴 및 연계

2) 기술이전 사업화 : 스마트제조시스템 기업의 사업화 성공 지원

3) 강소형 기술창업 : 혁신기술창업 등 기술특화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
4)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: 네트워크 운영, 기업 육성 등 제조
혁신 생태계 조성

다. 근거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○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제58조 및 제58조의2

○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

라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○ 2019. 9. 27. : 구미강소특구 지정 신청(경북도 → 과기부)

○ 2020. 7. 27. :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의결(연구개발특구위원회)

○ 2020. 8. 27. :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

○ 2021. 3. 10.~2022. 3. 9. : 1차년도 사업 시행

○ 2022. 2. : 1차년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

○ 2022. 3. 10.~ : 2차년도 사업 시행

마. 기대효과

○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활성화와

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 확산
및 특구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, 기술-창업-성장이 선순환 하는
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

-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
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가능

4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「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」 은,

- 2020년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2021년부터
2025년까지 5년간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
소규모·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제출된
동의안으로써,
-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고 유망 기술의 사업화,
연구소기업·첨단기술기업 설립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함
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
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생 략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